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세부사항 명시
(안 제4조~ 안 제7조)

○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의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최근 언론(21. 5. 26, 동아)을 통해 보도된 ‘빛의 대물림 형제’는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빛이 대물림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상속채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곤 함.
- 아동의 경우, 상속여부 미인지 등으로 의사표시 불가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떠안는 상황 등 위기상황이 수시로 노출됨.
-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됨.
-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적 정의는 각 법률마다 상이하나 본 제정안에서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원연령을 폭넓게 정한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법령상 아동·청소년 연령 구분 >

구 분	아동·청소년 범위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인 사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규정 함.

< 민법 상 상속 관련 법률행위 구분 >

법률행위	법률효과	절차
단순승인 (제1019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제1019조 제1항)	상속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한정승인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전문가 상담, 등의 자원 봉사자 활용 등을 통한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과 관련된 자치단체별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 현재 전국 52곳(광역 8, 기초 44)에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또는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제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이 중에서 서울시와 14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번	조례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 7. 16.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19. 11. 8.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 7. 7.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 9. 13.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9. 24.
6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7. 8.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5. 13.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 10. 8.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2020. 6. 11.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3. 26.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2. 25.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2021. 11. 11.
13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2021. 7. 20.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 11. 11.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0. 7. 15.

○ 본 조례안은

- 「민법」에서 “상속채무” 관련 용어 사용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명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제명하였으며,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 현행법에서는 재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 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방안 모색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8
----------	-----

발의년월일: 2021년 11월 일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세부사항 명시
(안 제4조 ~ 제7조)

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민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11. 12. ~ 11. 16.)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

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 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h3 style="margin: 0;">영등포구청장 귀하</h3>				
<p style="margin: 0;">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서</p>				
<p>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p>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접 수 일)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				
신청내용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기타사항				